

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정관

개정 2022.11.21
개정 2022.01.27
개정 2019.05.16
개정 2012.11.08
개정 2010.02.28
개정 2008.01.06
개정 2005.09.08
제정 2003.08.26

제1장 총 칙

제1조(명칭) 이 법인은 사단법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(이하 본 학회라 한다)라 정하고 영문 명칭은 Korean Radioactive Waste Society (KRS)라 한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2조(목적) 본 학회는 사회일반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공익법인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을 바탕으로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학술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22.01.27.] [개정 2022.11.21]

제3조(사무국의 소재지) 본 학회의 사무국은 대전광역시에 둔다. [개정 2012.11.08.]

제4조(사업)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후핵연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. [개정 2022.01.27.]

1. 학술발표회 및 강연회 등의 개최 [개정 2010.02.28.][개정 2022.01.27.]
2. 학회지 등 학술간행물의 발행 및 배포 [개정 2010.02.28.] [개정 2022.01.27.]
3. 학술의 국제 교류 및 협력 [개정 2010.02.28.][개정 2022.01.27.]
4. 학술자료의 조사, 수집 및 번역 [개정 2010.02.28.][개정 2022.01.27.]
5. 자문 및 연구용역 [개정 2010.02.28.][개정 2022.01.27.]
6. 교육훈련 [신설 2022.01.27.]
7. 학술 및 연구활동을 위한 제반 협조 [개정 2022.11.21]
8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법인 공여 이익의 수혜자)

① 본 학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



부담시킬 수 있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
② 본 학회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, 출신학교, 근무처,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2장 회 원

제6조(회원의 자격 및 구분) 본 학회 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개인 및 단체로 하며 회원의 구분 및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.[개정 2022.01.27.]

1. 정회원 : 방사성폐기물, 사용후핵연료 및 이에 관련된 학문을 전공한 자 또는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2. 법인회원 : 본 학회의 사업취지에 찬동하여 찬조 및 기부를 한 단체 또는 업체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3. 명예회원 : 방사성폐기물, 사용후핵연료 및 이에 관련된 분야의 학술발전에 공적이 현저하거나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공적이 있는 인사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4. 학생회원 : 대학 또는 이와 동등한 기관에서 방사성폐기물, 사용후핵연료 및 그에 관련된 학문을 수학하고 있는 자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가입비 및 해당년도 연회비를 납부한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
제-조(회원의 입회, 탈퇴 및 제명) [삭제 2012.11.08.]

제7조(회원의 권리와 의무) 본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와 권리를 갖는다.

1. 회원은 정관을 준수하고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
2. 회원은 연구발표를 할 수 있고, 학회지에 투고할 수 있다.
3.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하여 보고를 받으며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갖는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4. 정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법인회원, 학생회원, 명예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없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8조(회비) 본 학회 회비의 구분, 부과, 징수 및 기타 필요한 사항은 시행세칙에 의한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9조(회원의 탈퇴 및 제명)

- ① 회원 본인 의사에 따라 회장에게 통보함으로써 탈퇴할 수 있다. [신설 2022.01.27.]
- ② 회원 중 정관을 위반하거나 학회의 명예를 훼손시켰을 때 또는 회비 체납의 경우에는

이사회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제명할 수 있으며, 탈퇴 또는 제명되어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3장 임 원

제10조(임원의 구성)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. [개정 2022.01.27.]

1. 회장 1인
2. 부회장 5인 이내 [개정 2008.01.06.][개정 2019.05.16.]
3. 감사 2인
4. 이사 5인 이상 30인 이내 (회장 및 부회장 포함) [개정 2005.09.08.][개정 2008.01.06.][개정 2019.05.16.][개정 2022.01.27.]
5. [삭제 2022.01.27.]
6. [삭제 2022.01.27.]

제11조(임원의 임기)

- ① 본 학회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 [개정 2005.09.08.][개정 2022.01.27.]
- ② 회장의 유고시에는 부회장 중 연장자가 후임 회장을 선출할 때까지 임시회장직을 수행한다. [신설 2012.11.08.]
- ③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 후임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. [개정 2012.11.08.]

제12조(임원의 선임)[개정 2022.01.27.]

- ① 본 학회의 회장과 감사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하며, 세부사항은 회장 및 감사 선출 규정에 정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- ② 부회장을 포함한 이사는 선출된 회장이 추천하고 총회의 승인을 얻어 선임한다. [신설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- ③ 회장은 학회의 운영을 위하여 각 이사에게 총무, 재무, 사업, 편집, 학술, 대외협력, 국제협력 및 특임 등의 보직을 부여한다. [개정 2022.01.27.]
- ④ 차기 회장은 현 회장의 임기 만료 해에 개최되는 평의원회에서 선출한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⑤ 회장의 유고시에는 임시회장이 30일 이내에 평의원회를 소집하여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⑥ 본 학회의 임원은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⑦ [삭제 2022.01.27.]

제13조(임원의 임무)

-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학술사업을 총괄하여 총회, 평의원회 및 이사회 의장이 되며 학회 업무를 총괄한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한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 부터 부여받은 보직업무를 수행한다. [개정 2022.01.27.]
- ④ [삭제 2022.01.27.]
- ⑤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행한다.
 1. 본 학회의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.
 2. 본 학회의 업무집행사항을 감사하는 일.
 3. 제1호와 제2호의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나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.[개정 2022.01.27.]
 4. 제3호의 안건을 보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 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. [개정 2022.01.27.]
 5. 본 학회의 재산 상황 또는 업무진행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.
 6. 총회 및 이사회 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.
- ⑥ [삭제 2022.01.27.]

제14조(임원의 결격 사유)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본 학회의 임원이 될 수 없다.

1. 금치산자, 한정치산자 또는 파산의 선고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.
2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않는 것으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3.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4.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판결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.

제15조(임원의 해임) 본 학회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. [신설 2022.01.27.]

1. 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
2. 임원 간의 분쟁 ·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
3. 학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

제4장 총회

제16조(총회의 구성 및 기능) 총회는 본 학회 정회원으로 구성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

결한다.[개정 2022.01.27.]

1.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2. 예산 및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.
3.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사항.
4. [삭제 2022.01.27.]
5. 회장과 감사를 제외한 이사 선임 승인에 관한 사항 [신설 2022.01.27.]
6. 기타 중요한 사항.

제17조(총회의 소집)

-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뉘며, 정기총회는 연1회 개최하고,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.
- ② 회장은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7일전에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-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.[개정 2022.01.27.]
- ④ 총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치 못하는 회원은 위임장으로 대처할 수 있다.

제18조(총회 의결 정족수)

- ① 총회는 정회원 10분의 1 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[개정 2008.01.06.][개정 2022.01.27.]
-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[개정 2022.01.27.]
- ③ 회원은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회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[신설 2022.01.27.]

제19조(총회 소집의 특례)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 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 2. 제13조 제5항의 제4호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.[개정 2022.01.27.]
 3. 정회원 5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[개정 2022.01.27.]
-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.[개정 2022.01.27.]
-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[개정 2022.01.27.]

제20조(총회 의결 참여 제외 사유) 회장 또는 회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
1. 임원 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

2.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본 학회와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

제21조(총회 의사록) 총회의 의사록은 임원 5인 이상의 서명 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.

제5장 평의원회 [2012.11.08. 신설]

제22조(평의원회의 기능)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[개정 2022.01.27.]

1. 회장과 감사의 선출
2.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[신설 2022.01.27.]
3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.

제23조(평의원회의 구성, 선출 및 임기)[개정 2022.01.27.]

- ① 평의원회는 선출직 평의원과 당연직 평의원으로 구성하며, 구성 및 선출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에 정한다.[개정 2022.01.27.]
- ② 평의원은 100인 이상 150인 이내로 한다. [개정 2019.05.16.][개정 2022.01.27.]
- ③ 평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[개정 2022.01.27.]

제24조(평의원회의 소집)[개정 2022.01.27.]

- ①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회장이 회의 7일전까지 회의 안건을 명시하여 소집한다.[개정 2022.01.27.]
 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 2.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 3. 재적 평의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.
- ② 평의원회는 제1항의 통지 사항에 관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.

제25조(평의원회의 의결 정족수) [개정 2022.01.27.]

- ① 평의원회는 재적 평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, 출석 평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[개정 2022.01.27.]
- ② 평의원회의 출석 및 의결은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.[신설 2022.01.27.]
- ③ 평의원은 서면이나 전자적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위임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당해 평의원은 출석한 것으로 본다.[신설 2022.01.27.]

제26조(평의원회 서면 결의의 금지) [삭제 2022.01.27.]

제27조(평의원회 의사록) 평의원회의 의사록은 출석 평의원의 서명날인과 함께 이를 보존한다.

제6장 이 사 회

제28조(이사회회의 기능)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
1. 사업계획 및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.[개정 2022.01.27.]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.[개정 2022.01.27.]
3. 정관의 변경, 시행세칙 및 규정 제·개정에 관한 사항. [개정 2022.01.27.]
4. [삭제 2022.01.27.]
5. 회원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.
6.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.
7.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임받은 사항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8. [삭제 2022.01.27.]
9. 기타 중요한 사항.

제29조(이사회회의 소집)

- 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-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7일전에 회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[개정 2022.01.27.]
-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해서만 결의할 수 있다.

제30조(이사회회의 의결정족수) [개정 2022.01.27.]

- ①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. [개정 2022.01.27.]
- ② 이사회회의 의사는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.
- ③ 이사회회의 출석 및 의결은 영상회의를 이용하여 할 수 있다.[신설 2022.01.27.]
- ④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[신설 2022.01.27.]

제31조(이사회 소집 특례)

- ① 회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 1.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받을 때
 2. 제13조 제5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[개정 2022.01.27.]
-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회의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. [개정 2012.11.08.]
-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부회장 중 연장자 순으로 의장이 된다.[개정 2022.01.27.]

제32조(이사회회의 서면결의 금지) 이사회회의 의사는 서면 결의에 의할 수 없다.[개정

2022.01.27.]

제33조(이사회 의사록) 이사회의 의사록은 출석 임원의 서명날인으로 이를 보존한다.[개정 2022.01.27.]

제7장 고문 및 부설기관 [신설 2022.01.27.]

제34조(고문)

- ① 본 학회는 필요시 2인 이내의 고문을 두고 회장의 업무에 대한 자문을 받을 수 있다.
- ② 고문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며, 직전 회장은 당연직 고문이 된다.
- ③ 고문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
제35조(부설기관)

- 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시 부설기관을 둘 수 있다.
- ② 부설기관장은 회장이 추천하고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한다.
- ③ 부설기관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- ④ 부설기관 운영 및 업무, 연구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.

제8장 위원회 및 사무국

제36조(위원회 및 사무국 설치)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위원회 및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, 구성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세칙 또는 별도의 규정에 정한다. [개정 2012.11.08.][개정 2022.01.27.]

제9장 재산 및 회계

제37조(재정)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금으로 총당한다.

1. 회원의 가입비와 회비 [개정 2022.01.27.]
2. 보조금, 찬조금 및 기부금
3. 기타 수입금

제38조(회계 연도) 본 학회의 회계 연도는 정부의 회계 연도에 따른다.

제39조(세입, 세출예산) 본 학회의 세입, 세출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사업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.



제40조(결산) 회장은 회계 연도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연간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를 거쳐 차기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 [개정 2022.01.27.]

제41조(예산외의 재무부담 등) 예산외 채무의 부담이나 채권의 파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42조(기부금 등의 공개) 매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은 학회 홈페이지(www.krs.or.kr)를 통해 다음해 3월말까지 공개한다. [신설 2022.01.27.]

제10장 보 칙

제43조(해산)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44조(학회 해산시의 재산귀속) 본 학회가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킨다.

제45조(정관변경) 본 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[개정 2022.01.27.]

제46조(시행세칙 및 규정)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세칙 및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하고, 중요한 사항은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[개정 2022.01.27.]

제47조(공고사항 및 방법)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할 필요가 있을 때, 이를 일간신문에 공고한다.

1. 본 학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
2. 본 학회의 해산
3. 기타 중요한 사항

제48조(설립 당시의 임원 및 임기)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회 장	이 건 재	대한민국	2 년
부 회 장	박 현 수	대한민국	2 년
	송 명 재	대한민국	2 년
감 사	박 상 훈	대한민국	2 년
	황 주 호	대한민국	2 년
총무이사	오 원 진	대한민국	2 년



	김 창 락	대한민국	2 년
재무이사	채 태 수	대한민국	2 년
	송 종 순	대한민국	2 년
사업이사	임 영 조	대한민국	2 년
	신 영 호	대한민국	2 년
편집이사	박 원 재	대한민국	2 년
	서 용 철	대한민국	2 년

부 칙

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 단, 학회의 사단법인 등록이 되기 이전에는 주무관청의 승인을 생략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03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05년 9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08년 1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10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12년 11월 08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19년 5월 16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22년 1월 27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본 정관은 2022년 11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
